

충주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2008. 9. 12(금)

#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  
례안

산업건설위원회

#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 고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 9. 2	2008. 9. 2	2008. 9. 8	2008. 9. 8	경제과장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	"	"	경제과장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	"	산림녹지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로 되어 있는 조례의 지원규정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높은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나.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충주시 관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비용부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종전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휴양림 운영을 현실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도권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로 정함(안 제18조)
-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에 대해 건물임차료, 시설·장비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 2)

#### **나.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오·폐수 등을 유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5조)
- 폐수배출사업자, 오·폐수 유입사업자, 방류수나 배출수 수질오염기준 초과자의 경우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3, 4, 5장)
-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19조)

## 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안 제6조)
- 휴양림 시설사용, 행위제한, 입장제한 사유명시 (안 제10~12조)
- 성수기, 비성수기와 시설물 연수에 따라 사용료 차등부과 (안 제5조 별표1)
- 예약취소에 대한 귀책사유별 환불 및 배상기준 명시 (안 제9조 별표2)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현재의 조례안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만을 규정한 바 조례안 제2조 14호에서 통계청 고시 2007-5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사업지원서비스업”중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
- 조례안 제18조 제2항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보조금 신청기일을 “토지 등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던 바 현실적으로 토지 분양·매입시점으로부터 기간을 1년으로 신청 기일을 정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일이 촉박하므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 신청기일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산업

## 자원부 고시(2008-6호)를 개정하여 시달

- 하나은행도 이 조례에 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지역에 컨택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
- 따라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건물임차료의 일부”와 제2항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입지지원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4가지로 대별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국·도비를 받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시비부담이 25%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그렇지만 본 컨택센터는 굽뚝없는 산업으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종목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도시 위주로 입점이 되었었던 바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설되는 컨택센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 공고 제2008 - 557호)을 입법예고하여 컨택센터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 시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컨택센터가 사업성과를 이룸으로써 더 많은 시민을 고용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

#### **나.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이 조례는 최근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중원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 및 생활폐수에 대한 종말처리장의 운영내용, 비용부담, 위탁관계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
- 중원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사가 종료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다고 하며, 첨단산업단지의 처리장은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함
- 본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지원에 의거 처리하게 되는 시설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조성하여 본 조례에 의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본격 가동 시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것
- 조례안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규정하였는데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 등은 시설설치비와 유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처리된 오염물질이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장 제19조에서는 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시설 설치비 + 유지관리비 + 배출부과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20조에서 세입금의 사용처를 규정하였는데

조례안 제20조 제2항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용도

제1호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는 설비가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장비의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기계장비 교체·보완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나 제2호,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제3호,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한다는 규정은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용도와는 적절하지 않고

향후에는 위탁받은 사업소장이 본 재정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게 될 예정으로 (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19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방만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음

-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폐수종말 처리장의 관리사항과 비용부담의 근거, 조례시행규칙에서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

## 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본 조례는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했던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
- 우선 전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삼았던 「산림법」이 2005년 폐지되면서 기능과 성질별로 나뉘어
  - 산지보전을 위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도모하고자 한 「산지관리법」
  -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수목류, 토석류와 같은 생물, 무생물자원 기타 산림경관 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중점을 둔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림·육림, 국유림재산관리를 통하여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로 바뀌었음
- 이 조례에서는 그 두 번째 법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산림휴양을 위하여 조성한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입장료에 대한 사항  
입장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대개, 시설 이용자들이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민들

이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입장료 폐지는 적절

- 캠프파이어장, 오토캠프장, 테니스장은 기존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료를 폐지하였고, 숙소사용료를 낸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부분으로 폐지
- 시설사용료는 종전 일괄적인 요금을 적용했던 것을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였고, 숙소의 신·구형여부에 따라 차등을 둠  
요금은 종전과 비교하면 성수기요금은 조금 비싸게, 비수기 요금은 종전과 싸게 책정  
또한 숙소의 '주간 사용'의 경우를 없애고, 일괄 1회 사용기준 입실일 13:00 ~ 익일 11:00까지로 정함
- 조례안 제5조에서 시설사용료 납부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원화하였는데 현금사용이 줄고 대체 통화사용방법이 대중화된 요즘에 적절
- 조례안 제6조 제1호에서 시에서 산림관련 교육·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 '후원'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하도록 한다면 시의 후원을 명목으로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 자칫 휴양림운영이 방만

해 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안 제8조 제1호에서 예약자의 착오로 타인 명의로 예약금을 입금한 경우 예약을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예약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타인명의 예약금 입금도 예약된 것'으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됨
- 조례안 제9조에서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한 숙박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기준표에 의거 작성한 바 별 다른 무리는 없다고 하겠음
-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의 제한이나 행위제한 등의 규제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5. 질의답변 요지

### 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질의 : 이번 개정조례에 의거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잠금장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고용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인원에 맞게 보조금을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 인원변동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 신청당시 인원에 의거 정함

▶ 질의 : 하나은행 모집인원 중 제천지역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타 지역있는 사람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

○답변 : 우리지역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음

#### **나.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질의 : 산업단지 위탁경영시 기업 어려워 졌을 때 방치하면 골치덩어리가 됨 폐수처리비용 인상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 :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과 협의하고 처리장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나아가 관리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질의 : 휴양림 예약을 받을 때 전화로 받는 것은 불합리 함

○답변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6. 심사결과**

#### **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